

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(배현진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1094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6. 26.

발 의 자 : 배현진 · 최수진 · 정성국
김예지 · 우재준 · 김소희
김승수 · 정연욱 · 고동진
안상훈 · 박정훈 · 김성원
박정하 · 진종오 · 신성범
김 건 · 강명구 의원
(17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우리나라 미성년 연예인의 소득 관리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전적으로 맡고 있어 미성년 연예인의 소득에 대한 법적 보호가 미비한 상태임.

실제로 최근 수 차례 부모나 보호자가 미성년 연예인의 수입을 자신의 재산처럼 탕진하는 사례가 발생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바 있음.

반면, 미국, 프랑스 등 해외국의 경우 미성년 연예인 명의의 신탁 계좌에 수익의 일정 부분 이상을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신탁금은 미성년 연예인이 성인이 되었을 때 출금이 가능하도록 하고, 법원의 명령 등 긴급상황 시만 예외적으로 출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보수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탁 계좌에 예치하도록 하고, 특별한 사정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출할 수 있게 함으로써,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소득보호는 물론 경제적 자립 기반 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함(안 제2조, 제4조 및 제25조의2 신설 등).

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1. “신탁 계좌”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대중문화예술용역 보수를 관리하기 위하여 해당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말한다.

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 보수에 대하여 제25조의2를 적용하는 경우에 이 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.

제2장 제2절에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5조의2(청소년 대중문화예술용역 보수의 신탁 등) ①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(이하 “친권자등”이라 한다)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대중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할 시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명의의 신탁 계좌를 개설하고 이에 관한 정보를 대중문화예술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.

- ② 제1항의 신탁 계좌는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인가를 받은 신탁업자에 개설되어야 한다.

③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보수의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제1항에 따른 신탁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. 다만, 친권자등이 신탁 계좌의 개설 및 정보 제공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수탁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에 따른 신탁 계좌에 입금된 대중문화예술용역의 보수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인출하여 사용할 수 없다. 다만,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그러지 아니하다.

⑤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신탁 계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40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의2. 제2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신탁 계좌에 입금된 보수를 부정하게 인출 또는 사용한 자

제41조제2항에 제3호의2 및 제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의2. 제2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하거나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

3의3. 제2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신탁 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한 자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신탁에 관한 적용례)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
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
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~ 10. (생략) <u><신설></u>	제2조(정의) ----- -----. 1. ~ 10. (현행과 같음) 11. “ <u>신탁 계좌</u> ”란 <u>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대중문화예술용역 보수를 관리하기 위하여 해당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말한다.</u>
제4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(생략) <u><신설></u> <u><신설></u>	제4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 ② <u>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 보수에 대하여 제25조의2를 적용하는 경우에 이 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.</u> 제25조의2(청소년 대중문화예술용역 보수의 신탁 등) ① <u>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(이하 “친권자등”이라 한다)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대중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할 시 청소년 대중문</u>

화예술인 명의의 신탁 계좌를 개설하고 이에 관한 정보를 대중문화예술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신탁 계좌는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인가를 받은 신탁업자에 개설되어야 한다.

③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보수의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제1항에 따른 신탁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. 다만, 친권자등이 신탁 계좌의 개설 및 정보 제공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수탁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에 따른 신탁 계좌에 입금된 대중문화예술용역의 보수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인출하여 사용할 수 없다. 다만,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그러지 아니하다.

⑤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신탁

제40조(벌칙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1. 2. (생략)

<신설>

3. (생략)

② (생략)

제41조(과태료) ① (생략)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. ~ 3. (생략)

<신설>

<신설>

4. ~ 6. (생략)

③·④ (생략)

계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40조(벌칙) ① -----

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2의2. 제2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신탁 계좌에 입금된 보수를 부정하게 인출 또는 사용한 자

3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제41조(과태료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3의2. 제2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하거나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

3의3. 제2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신탁 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한 자

4. ~ 6. (현행과 같음)

③·④ (현행과 같음)

